

##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설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 1. 축산분뇨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배경

■ '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기업화, 집단화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에 관심이 높아짐

- 소 : ('90) 2,126천두, 655천호, 3.2두/호  
→ ('00) 2,124천두, 303천호, 7.0두/호
- 돼지 : ('90) 4,528천두, 133천호, 34두/호  
→ ('00) 8,214천두, 24천호, 436두/호

■ 정부는 축산분뇨를 퇴비·액비화하여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축산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친환경농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

• '96년까지는 간이정화시설을 주로 지원하였으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면서 '97년 이후 자원화시설로 지원이 거의 통일되었음

■ 퇴비화시설의 경우 시설비와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수분조절제의 공급이 부족하여 농가에서 축산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와 관련 '01년부터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해서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으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며 '0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음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 2.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상 문제점

■ 축산농가에서 액비화처리를 할 경우 살포할 자경농지가 필요한데 양돈농가의 경우 자경농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액비화를

## 향후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화사업 추진계획

-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지원('03 : 680개소)하여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03년도에 「축분비료유통센터」 40개소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 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 등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액비에 대한 품질관리, 토양분석, 시비량 결정, 토양관리 프로그램 지도 등을 담당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를 평가·홍보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위해서는 살포할 농경지를 보유한 경종농가와의 체계적인 연계가 필요하나 연계가 미흡한 실정임

- 축산농가는 분뇨처리에 만 집착하고 경종농가는 액비의 사용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거나 품질 좋은 액비를 희망

-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액비 운반차량·살포장비 등을 새로 구입하여야 하고 액상이라 단위당 균질살포가 어렵고 살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

- 환경개선제(악취제거제)를 투여하지 않고 단순 저장한 후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발생하는 악취로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에 대처하기 어려움

- 액비의 부숙상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과태료 등 추징염려

### 상존

- 액비 사용기술·기준 등이 제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무분별한 사용 우려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의 비료성분, 액비의 비료성분 등을 분석한 후 「시비처방서」를 발급 받아 살포 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일부농가에서 관능적으로 살포

- 액비저장조의 건설한 시공으로 균열방지 및 정기적인 순찰로 액비유실 점검필요, 분뇨에 포함되어 있는 무기물이 슬러지화되었을 때의 처리에 대한 문제 등 상존

### 3. 액비저장조 지원사업 추진 현황

- 축산분뇨 액비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00년도에 관계 기관협의회, 액비화사업 추진

지역 시찰, 등 수차례의 협의·회의를 거쳐 '01년도에 액비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

-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지구, 친환경가축농단지조성사업지구, 지역특화사업, 쌀생산대책실적가산금 및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에서 액비저장조를 시범 설치하도록 하였음

※ '01년 설치실적 : 339개소, 40.6억원 지원

- '02년도에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액비살포에 필요한 경지가 확보되어 있고,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축산농가와 사전에 계약된 경종농가에 대해 액비저장조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

\* '02년도 지원계획 : 400  
개소, 60억원

#### 4.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 등 액비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

##### 가. 액비저장조 설치관련

■ 액비저장탱크는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 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함

• 농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1천m<sup>3</sup>이상의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등과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농약·농기구·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세대당 1,500m<sup>3</sup>(농지전용 신고일 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까지 농지전용 신고하고 설치가 가능함

■ 경종농가가 액비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1일 1톤 이상 처리하는 경우) 오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환

경 담당부서)에게 재활용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 및 허가대상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축산폐수 확보 계획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시설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오분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나. 액비살포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시 오분법 규정상 처벌 받을 수 있는 벌칙 등의 종류**

※ 오분법 규정에서 악취를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 신고·허가규모

농가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축사규모를 늘린 경우 등

⇒ 100만원 이하 과태료(오분법 제58조)

##### ■ 허가규모 농가가 변경허

가를 받지 않고 축사규모를 늘린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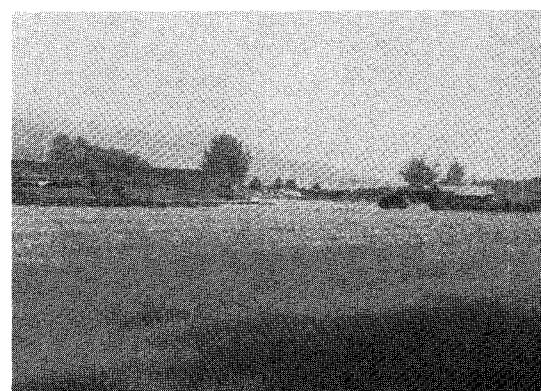
⇒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오분법 제53조)



▲ <자료사진> 액비 저장탱크(경북 구미)



▲ <자료사진> 액비 살포 전경



▲ <자료사진> 액비를 이용한 논

■ 축사중 운동장을 설치하고 폐수유출방지턱 미설치 경우 등 시설개선명령발령 후 미이행시

⇒ 허가규모는 6월이하 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오분법 제55조8호), 신고 규모는 200만원이하 벌금 (오분법 제56조6호)

■ 허가규모농가에 설치한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관리일지」가 3년간 미보존된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처리시설에서 악취가 나거나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가 발생·번식하는 경우  
⇒ 100만원이하 과태료

■ 저장액비를 허가나 신고 시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경우  
⇒ 2년이하 정역 또는 2천 만원이하 벌금

#### 다. 경종농가에서 액비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

■ 우량액비 생산을 위하여 발효가 쉽게 되거나, 악취 저감에 적합한 분뇨공급 요망

• 육성·비육돈 축분 위주로 공급요망하며, 항생제, 소독제의 사용을 가급적 금지한 우량 축분뇨 공급요망

■ 악취 저감 및 부숙촉진을 위한 환경개선제 지원 요망

• 환경개선제의 효율적인 사용방법 교육 포함

■ 농업기술센터에서 액비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시범포 설치, 연시회, 평가회 개최요망

• 액비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농업관련기관의 지도를 희망하고 있음

#### 5. 향후 액비저장조 설치 및 액비화사업 추진 계획

■ 가축분뇨가 농사에 좋은 것은 모두 알고 있다고 보지만 저장 및 살포시 발생하는 악취와 과량시비로 인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을 두려워하고 있으므로, 경종농가 입장에서 분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보급 및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분뇨액비 사용기준, 살포시기, 살포농도, 살포시 유의사항 등 액비사용 기술과 작물별 액비의 사용 예를 담은 기술지도지침(가축분뇨액비 사용기술, 2001)을 발간하여 현장에서 농가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계속 보급할

#### 계획임

■ 경종농가에 대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확대지원('03 : 680개소)하여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형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경종농가와 축산농가를 연계시켜 액비의 원활한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03년도에 「축분비료유통센터」 40개소를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수거, 운반, 살포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임

•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양돈협회 시·군지부 등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액비에 대한 품질관리, 토양분석, 시비량 결정, 토양관리 프로그램 지도 등을 담당

■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환경개선제를 평가·홍보할 계획이며, 축산농가에서 평가결과 우수한 환경개선제를 활용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질 좋은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기 설치된 액비저장조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하여 액비저장조 활용성과를 높이도록 하며, 향후 축산분뇨자원화 사업 특히 액비화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임양동**